

2012.12.28.(금)

보도자료

2012년 12월 28(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정렬 과장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좌미애 사무관(☎750-2773) miae@kcc.go.kr

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월 28일(금)에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2.8.18.)되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인증수단(휴대전화)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12. 11월 현재, 민간 아이핀 496만건, 범용 공인인증서 319만건, 휴대전화 5,345만대

이동통신 3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방통위는 보안·네트워크,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 10인을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2회 실시하였다.

금번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끝.